

세종특별자치시

- 주민주도의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 마련(주민자치회 구성, 마을계획 수립·주민총회 개최)
- 시민중심의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(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: 16세 이상 시민참여, 시민주권회의 운영: 10개 분과 구성, 239명 위촉, 시민주권대학 운영: 570여명 수료)
- 읍면동 행정혁신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(읍면동장 주민추천제,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: 마을자치를 위한 예산 159억원 편성)

I. 주민자치사업 관련 지원현황

1. 주민자치사업 관련 지원현황

사 업 명	사 업 내 용	특 이 사 항
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	·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	· 18년 하반기 442개 · 19년 하반기 552개
주민자치 특성화사업	·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주민자치 등 공모를 통한 주민 참여형 우수사업 발굴	· 18년 12개, 19년 16개 특화 사업 추진
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지원	· 他 지자체 우수 주민자치센터 간 1:1 자매결연 교류 지원	· 18년 12건, 19년 17건 자매결연·교류 사업 추진
주민자치 박람회	·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· 주민자치 홍보관 및 체험 부스 운영	· 1,200여명의 시민 참여 · 주민자치사업 홍보·공유
위원 역량강화 워크숍	·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통한 위원 사기진작 및 자치역량 강화	·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연계 개최(170여명 참여)
주민자치센터 문화행사지원	·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·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	· 읍·면·동별 연 1회 개최

II. 대표사례

1. 사 례 명 : 주민주도의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 마련

2. 추진기간 : '18.9 ~ 현재

3. 추진주체 : 市, 읍·면·동, 주민자치(위원회), 시민

4. 추진배경

- 세종시는 인구 급증과 행정수요 확대* 등의 자치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 의식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가 중요

* ('12년) 115,388명 → ('19년) 335,826명 / ('12년) 1읍 9면 1동 → ('19년) 1읍 9면 9동

- 특히,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읍·면·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으로 구현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및 실질적 주민참여의 기반 토대 구축

5. 사업내용

5-1.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

구 분	추진내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 조례 개정 검토 	'18.9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자치 업무전담을 위한 쑤 읍·면·동 전담요원 배치(19명) 	'19.2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전면 개정('19. 4. 10) 	'19.4월
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 선정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 의견수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읍·면·동장 회의, 시민주권회의 총괄회의·자치분권문화 회의 등 → 일방적, 강제적 전환이 아닌 희망 지역 우선 자발적 단계적 추진 지역 신청 조사('19. 4. 3~19) / 3개 지역 선정 	'19.4월
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출범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6세 이상 주민 대상, 10~50명 이내 규모 성별·지역별·연령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한 주민 대표성 확보 '19년 세종시 주민자치회 출범('19. 7. 2, 130여명) 	'19.7월

- 희망적·단계적 주민자치회 시행을 선택*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, 일반시민의 혼란 최소화

* 장군면, 한솔동, 도담동 3개 지역 실시 ('21년까지 쑤 읍·면·동 완료)

- 16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(청소년 위원 10여명) 성별·지역별·연령별 안배를 통한 주민 대표성 확보

▶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주요내용	
주민자치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~50명 이내 규모, 16세 이상 누구나 참여하도록 시민참여 명문화 성별, 지역별, 연령별 안배를 통한 주민 대표성 확보(공개모집·추첨 100%)
주민총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읍·면·동 마을계획안, 주민참여예산사업,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문제, 주민의견 합치에 필요한 사항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 마련
마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자치회 운영, 마을의 다양한 현안과제를 발굴하여 마을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수립
마을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리별 마을계획 수립 및 제안, 주민 간 갈등 조정·중재, 리장 추천,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을 사업 제안 등

☞ “마을회 → 주민자치회 → 주민총회”로 이어지는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조례에 담아 주민자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

5-2. 주민이 만드는 자치로, 변화하는 우리 마을

구 분	추진 내용	비 고
마을계획단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을계획단 모집을 위한 적극 홍보, 마을계획에 관심이 있고 자발적인 활동의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·구성 	'19. 5월
마을계획단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민주권대학 마을계획 과정 운영 이론교육 및 상호 소통형 대면교육·현장학습 위주 교육 진행 	'19. 6월
지역조사·의제 발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사회 자원과 과제 등 기초조사 실시(읍·면·동 전담요원 협조) 	'19. 6월
마을계획 수립·실행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현 가능한 세부의제 도출, 각 의제 해결을 위한 과제 마련 세부의제별 실천적 실행계획 수립(관련 부서 사전협의) 	'19. 8월
주민숙의·총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·결정 	'19하반기
마을계획 실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(자치분권특별회계, 시민참여예산 등) 	'19하반기

- 마을계획단 구성을 위해 “찾아가는 주민회의”를 추진하여 사전 홍보하고(19개소), 이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열린 마을계획단 20개팀 구성

- 시민주권대학 마을계획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현안 발굴, 마을자원 조사, 마을계획 수립 까지 전 과정 교육 지원(마을계획과정 195명 수료, 28개 사업* 발굴)

* 세종 행복 아름 안전거리 조성, 주민이 함께하는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 등

- 주민 주도로 수립된 마을계획은 부서 검토, 주민 숙의 과정 등의 보완 과정을 거쳐 '20년 자치분권 특별회계에 반영, 사업 시행 예정

6.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

- 주민자치회를 통해 보다 자치, 협의, 위·수탁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,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있도록 주민자치 활동 보장의 근거 마련
- * 읍·면·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한계 극복
- 시민주도·시민참여·시민중심이 일상화되어 시민에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‘풀뿌리 민주주의’ 구현에 기여



주민자치회 구성()



주민자치회 출범()



마을계획 공유회()

II. 대표사례

1. 사 례 명 : 시민중심의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

2. 추진기간 : 18. 7 ~ 현재

3. 추진주체 : 市, 읍·면·동, 주민자치(위원)회, 시민

4. 추진배경

- 現 정부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한계 극복을 위해 자치분권을 내세우고 있으며, “주민자치, 마을자치”를 통한 참된 민주주의 실현 중요
-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조직으로 주민의 자발적·직접적인 시정 참여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시정 구호를 ‘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’으로 정하고 추진 중

‘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’ 추진방향

▶ 시민의 뜻이 시정에 직접·일상적으로 반영되고 시장과 市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자치체계로, 市의 마을 조직·마을입법·마을재정·마을계획·마을경제 등 5대 권한을 읍·면·동에 나누는 세종형 자치모델

마을조직	마을입법	마을재정	마을계획	마을경제
읍면동장 시민주권제 도입	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	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	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	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
읍면동 주민자치위 설치 및 리단위 마을회의 신설	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	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	마을공동체 지원	사회투자기금 신설
참여연령 16세로 확대			시민주권대학 운영	

5. 추진과정 및 내용

5-1.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기본조례

- 자치분권 가치를 구현하고,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」 제정('18. 11월) / 타운홀미팅, 시민설명회를 통해 시민의견 반영
- 시민의 경험과 활동 기반, 평등한 시정 참여(16세 이상 참여 명문화), 시민과 시의 협치,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등 규정

5-2. 시정 참여의 실질화, 시민주권회의 운영

- 시민의 의견이 참여·소통을 통해 행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 구성 / 239명 위원 위촉(시민,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) 및 출범식 개최('19. 1월)
- 시민주권회의를 통해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업, 현안사업 등 해당 분과별(11개) 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 진행(60여회 개최)

5-3.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주권대학 운영

- 시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주도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'시민주권대학'을 '19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중
- * 시민주권바로알기, 주민자치회 과정, 마을계획 과정 3개의 과정으로 구성
-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에 대한 높은 교육 만족도, 현재까지 500여명 수료 완료

6.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

- 일상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,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제고하는 제도 기반 마련
-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 대폭 증가, 시민주권대학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토대 구축



시민주권회의 출범()



시민주권대학 운영



교육 수료식

II. 대표사례

1. 사 례 명 : 읍·면·동 행정혁신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

2. 추진기간 : 18년 ~ 현재

3. 추진주체 : 市, 읍·면·동, 주민자치(위원회), 시민

4. 추진배경

-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역량이 우수한 자를 주민추천제 등을 통해 읍·면·동 장에 배치함으로써 민관 협치 시너지 효과 창출
- 시민참여와 협력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재정 사업예산을 통합하여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

5. 추진과정 및 내용

5-1. 내손으로 직접 뽑는 읍·면·동장 시민추천제

- 읍·면·동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읍·면·동장 시민추천제 도입, 내부 공무원 대상 시민추천제 시행

계획수립 및 방침결정	주민심의위원회 모집 및 구성	공모 및 대상자 선정	심의위원회 면접·심사	결과 활용 (임용)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-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·면·동장 공모, 16세 이상 주민 공개모집을 통해 20~50 명의 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·투표를 통한 심사·평가로 임명

5-2.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 마을 예산 (전국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)

- 「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,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(18년 11월), 19년 마을자치를 위한 예산으로 159억 원* 편성

<주민세 환원사업 vs 자치분권특별회계>			< '18년, '19년 주요 특별회계 사업 >	
구분	2018년	확대	2019년	
주요재원	주민세일부(균등분)		(주민세 전액(83억)+전입금(83억)) × 조정계수	
규모	11억 원		159억 원	
내용	주민세 환원사업	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		
전동면	• 구석구석 행복버스 운행			
연기면	• 주거 환경 개선사업			
보람동	• 유아쉼터 조성 및 운영			

6.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

- 시장의 읍·면·동장 임명 고유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 중심의 능동적 시정 참여 기회 마련,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 책임성이 담보된 마을의 재정자주권 확대